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0. 7.

KBIZ 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목 차

I. 개 요 1

II. 조사 결과 3

< [붙임]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표 > 8

I 개요

1. 조사 목적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와 관련한 방역·검역 조치 등 업계 의견조사를 통해 대정부(고용부, 중기부) 건의

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7,053개사
■ 유효표본	1,478개 업체(응답률 : 21.0%)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 조사지역/기간	전국 / '20. 7. 17.(금)~20.(월)
■ 조사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력지원부)

3. 조사 내용

- 사업장 기본정보 :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외국인근로자 수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현황
- 외국인력 입국 재개 시급성 여부(신청 국가 외 타국가 근로자 변경 의향)
- 외국인력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방안
- 외국인력 도입 시 추가비용(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 의향
- 외국인력 외 대체인력 활용 가능여부

4. 응답사업장 특성

<지역 분포>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율
전체		1,478	100.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48.2
	강원	21	1.4
비수도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5.1
	대구, 경북	128	8.7
	전북	48	3.2
	광주, 전남	90	6.1
	부산, 울산, 경남	241	16.3
	제주	15	1.0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단위 : 개사, %)

구 분	업체수	비 율
전체	1,478	100.0
1~4명 이하	153	10.3
5~10명 이하	390	26.4
11~30명 이하	602	40.7
31~50명 이하	196	13.3
51명 이상	137	9.3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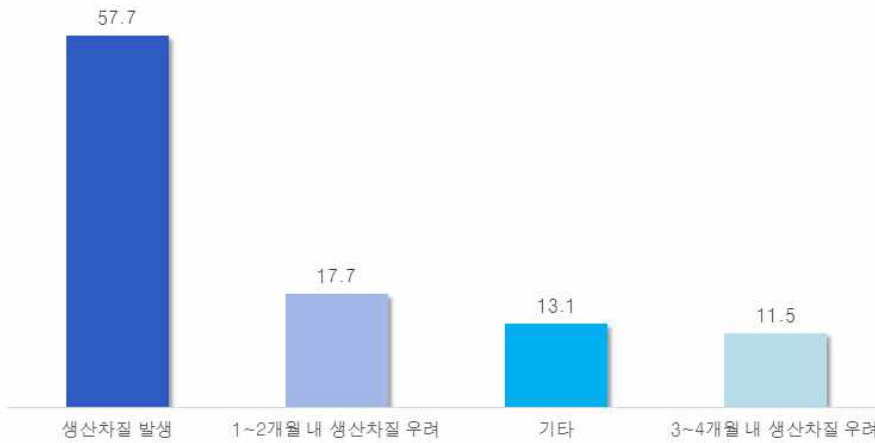
1.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일정이 지연되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57.7%),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 (17.7%), ‘기타’ (13.1%),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 (11.5%)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현황

표본 : 1,478

(단위 : %)



[표 1]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차질이 발생	1~2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3~4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기타	
전 체 (응답 비율)		1,478 (100.0)	853 (57.7)	261 (17.7)	170 (11.5)	194 (13.1)	
상시 근로자 수	1~4명 이하	153	107	18	13	15	
	5~10명 이하	390	229	82	30	49	
	11~30명 이하	602	346	98	84	74	
	31~50명 이하	196	88	46	27	35	
	51명 이상	137	83	17	16	21	
권 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423	132	67	90
		강원	21	12	6	1	2
	비수도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34	35	30	24
		대구, 경북	128	66	24	16	22
		전북	48	31	7	7	3
		광주, 전남	90	51	18	11	10
		부산, 울산, 경남	241	125	39	36	41
		제주	15	11	-	2	2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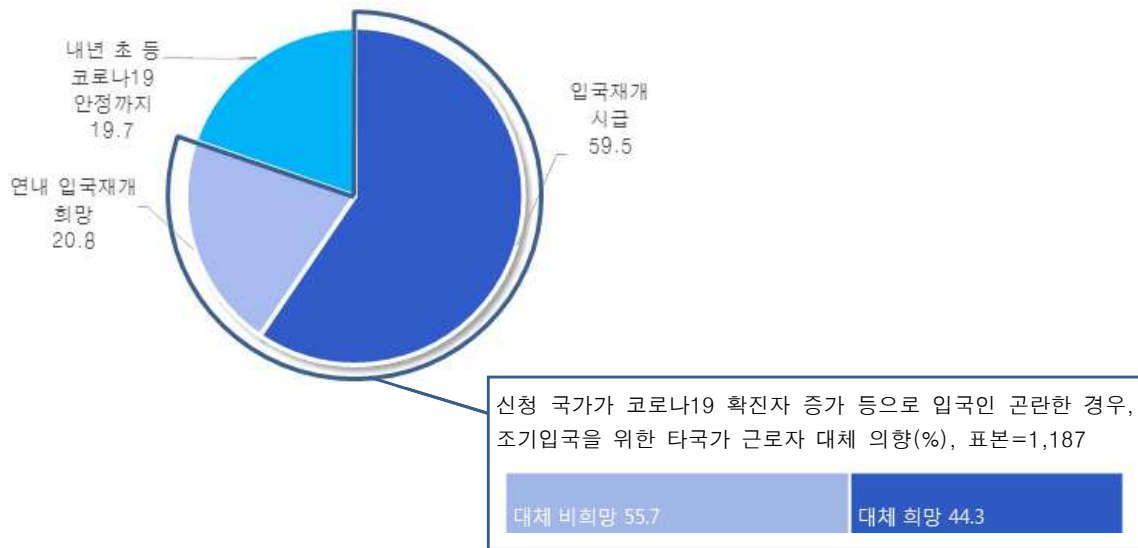
2. 외국인력 입국 재개 시급성 여부

- 입국 재개를 위한 중소기업의 의견으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 (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 재개 필요’ (20.8%), ‘내년 초 등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체인력 등 통한 운용 가능’ (19.7%) 순으로 조사됨

[그림 2] 외국인력 입국 재개 시급성 여부

표본 : 1,478

(단위 : %)



[표 2] 외국인력 입국 재개 시급성 여부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입국재개 시급	연내 입국재개 희망	내년 초 등 코로나19 안정까지	
전 체 (응답 비율)		1,478 (100.0)	879 (59.5)	308 (20.8)	291 (19.7)	
상시 근로자 수	1~4명 이하	153	110	21	22	
	5~10명 이하	390	241	93	56	
	11~30명 이하	602	355	129	118	
	31~50명 이하	196	106	38	52	
	51명 이상	137	67	27	43	
권 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428	158	126
	비수도권	강원	21	15	4	2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43	38	42
		대구, 경북	128	77	31	20
		전북	48	32	8	8
		광주, 전남	90	51	21	18
부산, 울산, 경남	241	122	46	73		
제주	15	11	2	2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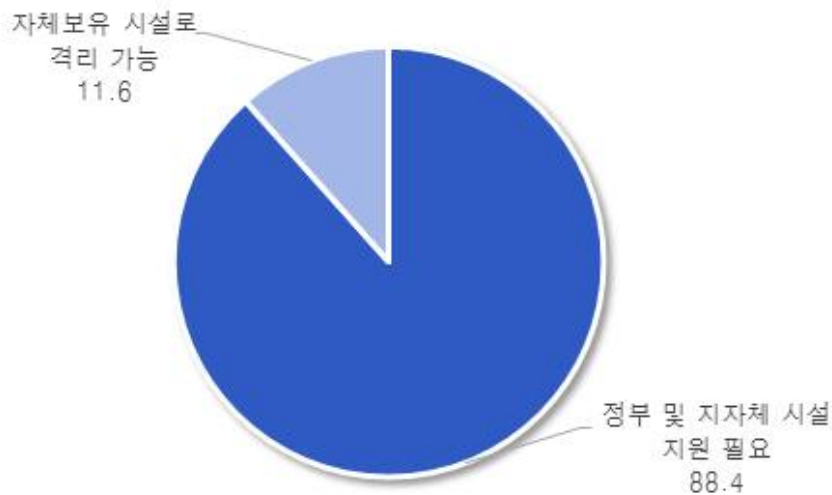
3. 외국인력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방안

- 외국인력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의 88.4%가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시설 지원 필요’로 응답하였으며, 11.6%는 ‘당사 자체 보유 시설로 근로자 자가격리조치(2주) 가능’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3] 외국인력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방안

표본 : 1,478

(단위 : %)



[표 3] 외국인력 입국 시 자가격리 조치방안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정부 및 지자체 시설 지원 필요	자체 보유 시설로 격리 가능	
전 체 (응답 비율)		1,478 (100.0)	1,306 (88.4)	172 (11.6)	
상시 근로자 수	1~4명 이하	153	133	20	
	5~10명 이하	390	346	44	
	11~30명 이하	602	536	66	
	31~50명 이하	196	169	27	
	51명 이상	137	122	15	
권 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639	73
	비수도권	강원	21	16	5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92	31
		대구, 경북	128	105	23
		전북	48	42	6
		광주·전남	90	83	7
		부산, 울산, 경남	241	215	26
		제주	15	14	1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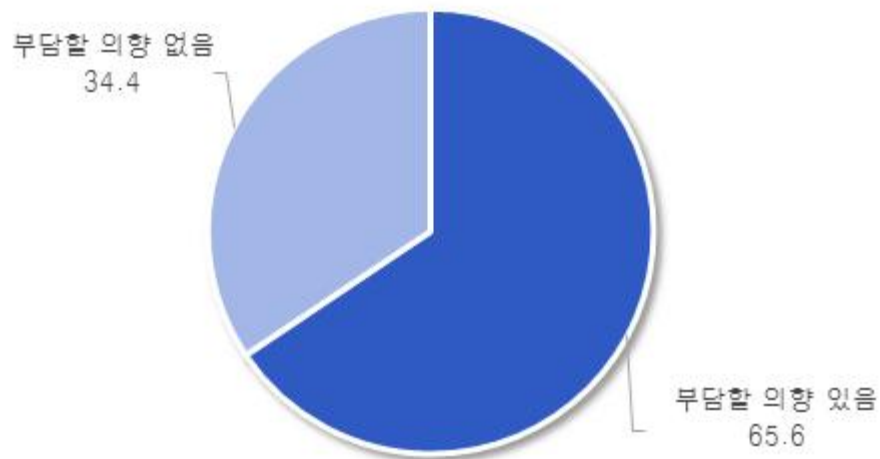
4. 외국인력 도입 시 추가비용(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 의향

- 철저한 방역 및 검역조치를 통한 신속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진행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65.6%는 ‘부담할 의향 있음’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4.4%는 ‘부담할 의향 없음’ 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4] 외국인력 도입 시 추가비용 부담 의향

표본 : 1,478

(단위 : %)



[표 4] 외국인력 도입 시 추가비용 부담 의향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부담할 의향 있음	부담할 의향 없음	
전 체 (응답 비율)		1,478 (100.0)	970 (65.6)	508 (34.4)	
상시 근로자 수	1~4명 이하	153	114	39	
	5~10명 이하	390	282	108	
	11~30명 이하	602	392	210	
	31~50명 이하	196	109	87	
	51명 이상	137	73	64	
권 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504	208
	비수도권	강원	21	15	6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44	79
		대구, 경북	128	77	51
		전북	48	29	19
		광주, 전남	90	63	27
		부산, 울산, 경남	241	127	114
제주	15	11	4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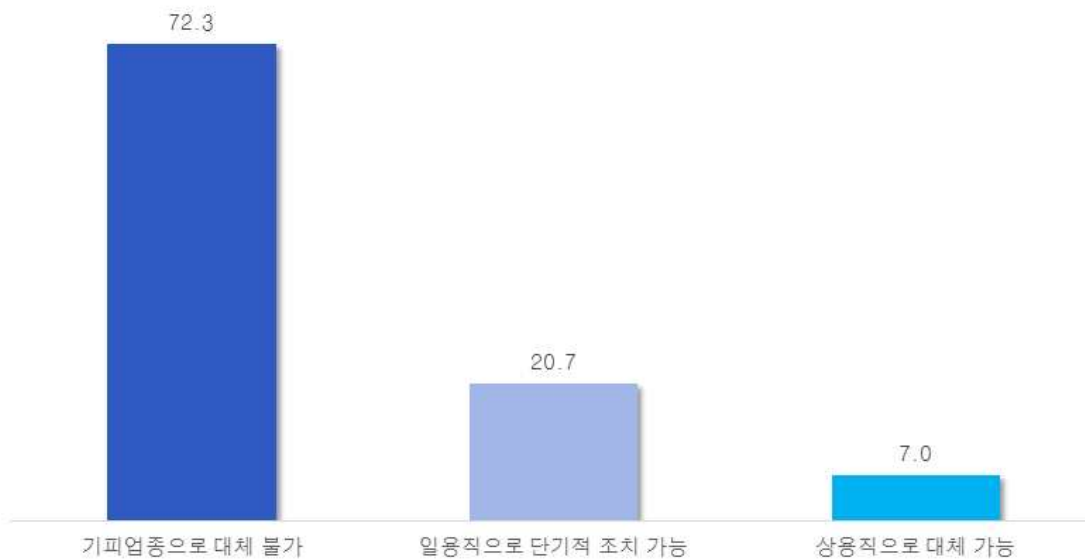
5. 외국인력 외 대체인력 활용 가능여부

- 연내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내국인 대체 불가’ (72.3%),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 가능’ (20.7%),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 (7.0%)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5] 외국인력 외 대체인력 활용 가능여부

표본 : 1,478

(단위 : %)



[표 5] 외국인력 외 대체인력 활용 가능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기피업종으로 대체 불가	일용직으로 단기적 조치 가능	상용직으로 대체 가능
전체 (응답 비율)		1,478 (100.0)	1,068 (72.3)	306 (20.7)	104 (7.0)
상시 근로자 수	1~4명 이하	153	124	29	-
	5~10명 이하	390	301	74	15
	11~30명 이하	602	445	117	40
	31~50명 이하	196	126	50	20
	51명 이상	137	72	36	29
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12	538	134	40
	강원	21	13	6	2
	대전, 충북, 충남, 세종	223	167	43	13
	대구, 경북	128	90	30	8
	전북	48	36	8	4
	광주·전남	90	61	20	9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241	151	63	27	
제주	15	12	2	1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

[붙임] 설문지 구성

[1] 귀사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인천 | ③ 경기 | ④ 강원 | ⑤ 대전 |
| ⑥ 충북 | ⑦ 충남 | ⑧ 세종 | ⑨ 대구 | ⑩ 경북 |
| ⑪ 전북 | ⑫ 광주 | ⑬ 전남 | ⑭ 부산 | ⑮ 울산 |
| ⑯ 경남 | ⑰ 제주 | | | |

[2]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 | | |
|--------------|--------------|
| ① 1~4명 이하 | ② 5~10명 이하 |
| ③ 11명~30명 이하 | ④ 31명~50명 이하 |
| ⑤ 51명 이상 | |

[3] 코로나19로 인해 2020.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 신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생산인력 운용 및 제품생산 등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②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 |
| ③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 | ④ 기타() |

[4] 2020.7월 현재 정부는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조치 등 방역·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를 위한 귀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 |
|--|----------|
| ①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 | (문항4-1로) |
| ② 코로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 | (문항4-1로) |
| ③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내년 초까지 대체인력 등 통한 운용 가능 | (문항5로) |

[4-1] 만약 신청하신 국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내 입국이 곤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조기 입국을 위한 근로자 국가 변경을 희망하십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5]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귀사의 자가격리조치 방안은?

- | |
|-------------------------------------|
| ①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시설 지원 필요 |
| ② 당사 자체 보유 시설로 근로자 자가격리조치(2주) 가능 |

※자가격리시설은 1인 1실, 각 방마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필요

[6] 귀사에서는 철저한 방역 및 검역조치를 통한 신속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8만원/1인 예상)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① 부담할 의향이 있음 | ② 부담할 의향이 없음 |
|--------------|--------------|

[7] 연내 외국인근로자가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하십니까?

- | | |
|------------------------|-------------------------|
| ① 내국인 기피업종으로 내국인 대체 불가 | ② 임시 일용직 고용 등 단기적 조치 가능 |
| ③ 내국인 상용직 근로자로 대체 가능 | |

“이 자료는 대정부 건의를 위한 조사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